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1. 22.(금) 09:0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 욱 상임위원 (1인)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0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2차 및 제5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54차 및 제5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57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9-57-294~304)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한 11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배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민원 접수 사업자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0개 사업자입니다. 먼저 유출 신고한 사업자는 4개사이고, 비트젯(주)의 경우 해킹에 의해 회원정보 65건이 유출되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주)위메프의 경우 이용자가 이벤트페이지 모바일 웹로그인 시 타인의 주문정보 20건이 조회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주)지앤디플러스는 관리자의 실수로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개인 카톡방에 업로드하여 유출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주)천재교과서는 해킹에 의해 회원정보 약 120여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했습니다. 민원 신고한 사업자는 16개 사업자인데 모두 통신사 판매점

입니다. 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고, 스마트통신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현장조사는 '18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 실시했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은 '19년 5월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조사대상 20개 사업자 중 비트젯(주)등 11개사는 정보통신망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CC통신 등 6개사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오리통신 등 3개사는 폐업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사업자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다섯 번째 비트젯(주)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입니다. 그리고 <표> 아래에서 세 번째는 (주)위메프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주)지앤디플러스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이고, (주)천재교과서는 온라인 교육업체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동전화 판매점입니다. <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 및 유출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트젯(주)은 해커가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이용자 계정을 탈취한 후에 회원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유출건수는 65건이고, 회원 고유번호, 이메일, SMS인증값,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위메프는 직원 과실로 이벤트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캐시정책 적용 오류로 인하여 타인의 주문정보가 노출된 사안입니다. 유출건수는 20건이고, 아이디, 성명, 휴대폰, 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지앤디플러스 역시 직원 과실로 회원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개인 메신저에 공유됨으로써 19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항목은 이메일, 코인 지갑 주소, 암호화키 등입니다. (주)천재교과서 해킹사건입니다. 웹게시판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웹shell 업로드를 통해 zip파일을 생성하여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웹로그 분석결과, member.zip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 회원수가 125만건인데 이 회원수 모두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출항목 역시 유출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법적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한 사업자가 4개사,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개인정보 보호 조치 중 접근통제 위반한 사업자가 4개사,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아서 위반한 사업자가 4개사, 악성프로그램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1개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개인정보 출력 시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아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파기 위반한 사업자가 7개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현재 (주)위메프 측의 의견진술인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진술을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신 후 사무처 검토의견과 시정조치(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난번에 논의가 어느 정도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 질의 이전에 사업자 진술부터 먼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지금부터 (주)위메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심인 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위메프사가 2018년 11월 1일경에 새로운 캐시 정책을 적용한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캐시설정 오류로 인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총 20건이 유출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위메프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확인하였기에 지난 2월 20일 (주)위메프사에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주)위메프' 측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위메프의 이재환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주)위메프의 김정희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정희 (주)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주)위메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진술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진술을 위한 자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의 실시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주)위메프사에 법 위반 사유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위메프의 이재환 이사께서 이번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사안과 관련해 3분 정도의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위메프의 법무실장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 위메프의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고객분들 그리고 판매자분들께 보다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에 나름 정보보호실을 대표이사 직할의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ISMS-P 인증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직원의 과실 내지 실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 하에서 저희 정보보호실 장비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조직 및 인력,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적어도 24억원 이상 투자를 단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략 10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현재의 보안시스템에 신규 솔루션 추가를 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설령 직원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서 감지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후장비의 교체에 약 4억원, 그리고 서비스 이중화에 1억원, 합계 15억 6,000만원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감사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에 더해서 모의해킹을 통해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고, 여기에 2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도 기존 2개 파트와 1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던 것을 3개 팀으로 격상시키고, 그리고 보안기술팀 내에는 침해대응 분석 파트를 새롭게 신설할 예정입니다. 인력 또한 현재 19명 인력을 25명으로 하면서 그중 3분의 2는 10년 이상 경력의 고급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용절차는 이미 개시를 했고,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임직원 보안 인식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특히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보보호실 직원들에게도 최신의 특화 전문교육들을 실시함으로써 할 예정이고, 이 비용 또한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저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확정된 것으로서 절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0월 간담회 당시에는 이런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좀 더 의사결정에 속도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점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대리인께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서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아닙니다. 저희 의견서에 드린 말씀...

○ 한상혁 위원장

-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 피심인측 법률대리인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건은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시스템 미비라든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아닌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하에서 직원이 실수를 한 경우에도 과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야 하고, 그 전제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이라는 점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이라는 것은 기술적 조치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 이상이라든지 취약점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또 유사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흡사 어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용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 착오로 다른 이용자의 메일주소를 같이 적어서 그런 주소들이 특정 이용자에게 노출이 된 경우도 그것도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 유출인데, 그런 경우에는 전형적인 임직원의 실수일 뿐이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별도의 과징금 부과 아니라 과태료 내지 시정명령으로 부과했다는 선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시스템 오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또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노출 규모 역시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만명 이상이 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 역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피심인의 경우에는 기존 과징금이 부과됐던 유출사건에 비교해 볼 때 노출의 경위가 시스템의 취약점 내지 오류가 아닌 단순한 직원의 실수인 점이고, 그다음에 노출 규모 역시 약 20건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피심인의 경우에는 이번 노출이 있었던 이후에 즉시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대해서 선제적으로 보상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심인께서 앞으로의 직원 실수를 최소화하거나 원천봉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투자 계획을 다짐하셨는데, 이런 직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 투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유사 업계에서 그런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오히려 더 부합하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사업자 측에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사항과 자료제출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지금 한꺼번에 해 주시지요.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번 사고 이후에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설비 등 투자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합산하면 24억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뜻입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최소 24억원 이상 투자를 단행할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했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리고 사람도 뽑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예, 지금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리고 장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혹시 사례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아까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사례인데 직원이 실수로 특정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해야 하는데 송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신자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전형적으로 시스템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점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과태료 처분으로 유도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 특히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방통위의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번 건이 시스템의 문제점이 아니라 정말 직원의 실수로 인한 점이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설명자료를 보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징금 부과가 된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메프 쪽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직원의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원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심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유출건수는 20건 정도로 작지만,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만명 정도가 유출되어야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7년에 이런 유출사고가 났을 때, 정보보호실장님이시지요?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지난번 사고 이후에 어떤 보안조치를 했습니까?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2017년 사고 발생 이후 '정보보호실'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했던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던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정보보호실 구성 이후 이런 재발사건이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고 직원 과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예. 시스템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은 거의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의 관리가 일부 소홀했던 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리고 유출된 사항 중 주소와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나 패스워드, 또 이메일 이런 것은 노출이 안 됐습니까?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비밀번호는 저희가 강화를 더 암호화 적용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노출 건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 당시 그 이후 만 하루 정도 노출된 것 같습니다.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저희가 관련된 피해자분들께 즉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마련해서 캐시 정책을 당장 바로 잡았고, 개인정보 잠시라도 노출되어 있던 부분 마스킹 처리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전체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로 해서 강제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그리고 관련된 고객 분들께는 즉시 현금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바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몇 명에게 준 것입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스무 분 피해자 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위메프가 파악하는 피해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피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 3가지가 유출됐으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또는 패스워드까지 노출될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확산될 텐데 위메프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것입니까.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번졌을 것 같습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개인정보 자체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결제나 말씀해 주신 패스워드 같은 정보는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성함이나 휴대전화번호도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만 이를 통해 2차나 3차 피해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2, 3차 피해가 많은 것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되어서 그것을 다시 권한 없이 들어가서 뭔가 또 피해를 입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유출의 가장 큰 피해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과실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고, 또 지난번 사고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보안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내렸고, 그 직후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런데 직원교육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직원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보안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일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다소 이해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약간 인간적인 실수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다음에 계도조치를 조금 더 이런 사고를 통해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완료한 시점입니다. 이번 이런 인간적인 실수로 인한 노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엄격한 계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요. 위메프가 상당히 인기 있는 쇼핑몰이고 직원도 1,400명 정도 되지요? 매출액도 2017년 매출이 4,000억원이 넘었던데 작년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작년도 2017년과 유사한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는 고객 분이 훨씬 늘어났지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직매입이라고 합시다만 저희 창구에 놓고 파는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유사한 정도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대형 쇼핑몰이고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그런 업체가 직원도 그렇게 수가 많고 매출액도 많은데 어이없는 직원의 과실 하나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24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니까 조치 끝나고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정말 보안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이다, 이런 대외적 이미지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빈틈없이 잘 보안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접근통제조항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사무처의 의견인데, 지금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재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고 조사를 해 왔다는 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용자 보호 수준을 고려해서 조금 더 탄력적 내지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4조제9항이 위반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 보다도 기존 선례에 비추어 보면 아주 단순한 과실로 인해 유출된 경우에는 이것을 유출에 의한 과징금으로 보지 않았던 선례들이 있었던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법률과 시행령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종래의 선례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위원장님이 법률적으로 정리를 일부분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위메프의 매출액이 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매출액입니다.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리고 2년 후 작년 매출액이 4,700억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자입니다. 2017년도도 제28조의1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도 웹사이트 환불 계좌 리스팅 페이지 42개 페이지에서 개발자 직원의 실수로 유저 식별 조건이 누락된 소스코드를 사용해서 그때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때 과태료 처분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때도 직원 실수, 이번에도 직원 실수입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망법 위반사항들을 계속 다루면서 강조해 왔던 것이 거의 상당 수가 시스템의 오류보다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실수, 이른바 직원 실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다룰 때마다 이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한다,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 저희가 국가인정 자격 제도, 그것도 추진해 오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직원 실수인데

지난번과 조금 달라진 것은 이번에는 아까 설명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도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망법 제27조의3 제1항도 위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직원의 실수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유감입니다. 직원 실수든 또는 시스템의 문제든 그것은 결국 그 회사 사업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 사업자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법 제28조에 나오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가운데에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관리적 측면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밑에 법 1의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지만 관리적 측면에서는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에 직원 실수로 인해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돈과 시스템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때 하셨어야지 두 번 일어나고 나서 지금 한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큰 곳에서 직원 실수로 인해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이런 구조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개인정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신 것은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법률자문하러 오신 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 큰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봐서 취지를 이해하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두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여러 가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다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비하겠다', '검토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정보보호실이라는 조직이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보호실장님도 2018년 상반기에 채용되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하나씩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얼마가 투자가 됐지요?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저희가 그 당시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안성 검토 프로세스와 시스템 강화하는데...

○ 김창룡 상임위원

- 그것은 두 번째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 정보보호실 신설하는데 조직 재정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예.

○ 김창룡 상임위원

- 오늘 보니까 거기에 24억원 정도 투자해서 대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데 1차 사건이 났을 때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예산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고 이후 정보보호실이 구성된 이후에 인력이 기존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그것도 별도의 실이 아닌 다른 플랫폼 운영 산하에서 담당하고 있는 3명만 존재할 당시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정보보호실을 구성하고 보안기술팀, 개인정보보호 파트, 정보보안 파트 이렇게 3개 전문 부서를 신설했고, 내부 인력은 기존 3명에서 현재 19명, 약 20명까지 증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때 3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예, 맞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리고 거기에 사전 보안성 검토를 강화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기존에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수동적인 의뢰를 통해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 세팅 이후에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거친 이후에 서비스 배포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었고, 현재 시점에는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재발방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 당시 조치를 취했을 때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스템 자동화하는 데에만 약 23.5억원 정도를 할당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 김정희 ㈜위메프 정보보호실장

- 최근에 2018년도 11월 1일 사고 이후에 대표님께서 더 추가 강화를 하라는 의사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산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위메프와 같은 큰 조직은 또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개인에 의한 실수를 강조하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개인의 실수와 기술적인 관리조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메프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말 실수에 의한 정보 유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때는 입체적인 이중삼중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장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 이재환 ㈜위메프 법무실장

-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100%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0%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 그러한 작업을 위해 소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개인의 잘못이라고 해서 회사는 나 몰라라 그런 입장을 취하자고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 내부의 모든 직원들이 각각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이고, 그 한 직원의 실수가 회사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인은 실수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장준영 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반복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를 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위메프와 같은 거대한 조직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면서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또 '개인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온라인 위주로 모든 환경이 개편되고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해 그 속도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저도 굳게 믿고 있고, 그럴수록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더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자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피심인 측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계속 직원의 실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기존 방통위의 선례들에 비추어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이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피심인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환 (주)위메프 법무실장**

-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본 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비적인 측면, 장비 보완, 조직, 인력, 교육 그리고 여러 모의해킹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길 수 있는 그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또한 같이 공감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역시 내년에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유통 플랫폼으로서 많은 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절실히 느끼면서 가급적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위메프’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검토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휴면 예러의 가능성 주장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의견진술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은 그동안에도 직원의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통제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외부에 노출되거나 공유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 위반행위로 잡아왔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아예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그리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라는 고시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지적한 부분은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의견과 사무처 검토의견입니다. (주)위메프 측에서 의견진술을 했습니다만 이 의견은 사전통지 후에 제출한 의견입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노출사건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모바일 웹부문에 해당하고, 이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를 특별히 산정하기 어려워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모바일 웹부문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해당 이벤트는 2018년에 처음 실시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18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정액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 하였습니다.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는 새로운 사업이 아닌 전체 쇼핑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서비스의 범위도 동일하여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로 한정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위반사업자 중 (주)골드문은 개인정보 파기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 무선상품 및 제휴카드 결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고객정보로 결합 완료시까지만 보유 후,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동의받은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주)에스알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 이동통신 개통영업점으로 고객 민원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마스킹 처리를 한 후에 보유하는 정보로 범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하였습니다. (주)에스알은 이동통신 개통영업점이 아닌 판매점입니다. 그리고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민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으므로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디에이치테크와 (주)씨엘입니다. 시정명령 처분 지적과 관련해서 (주)디에이치테크는 사실상 금번 조사대상인 (주)씨엘과 같은 회사로 각 회사별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불수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각 법인에게 부여되고 있고, (주)디에이치테크와 (주)씨엘은 각기 법인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천재교과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지적과 관련해서 해커의 웹셸 실행 이력과 파일 다운로드 기록만이 확인되어 유출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 정확한 유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 실패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용하였습니다. 웹서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파일 업로드 취약점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유출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5개사는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6>번 시정조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C.C통신 2호점 등 11개사가 모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반행위 즉시 중지,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입니다. <나> 과징금 부과 사항입니다. 비트젯(주), (주)위메프, (주)지앤디플러스, (주)천재교과서 4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젯(주) 등 3개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는 부과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비트젯(주)과 (주)지앤디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적고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에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주)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주)천재교과서의 경우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차후 수사기관에서 해커를 검거하여 유출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주)위메프의 경우, 직원 실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소규모 노출된 사안이나, 최근 3년간 유사한 위행위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출사고가 재발한 2회 위반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주)위메프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은 3,528억원입니다. 이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한 52억 9,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6억 4,6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7억 9,4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징금입니다. (주)위메프에 대해서 과징금 18억 5,2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C.C통신 2호점 등 10개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C.C통신 2호점, (주)골드문, (주)에스알, 엠퍼블유 4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C.C통신 2호점, (주)골드문, 엠퍼블유 3개사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고, (주)에스알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중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C.C통신 2호점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하고, (주)에스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와 신고를 지연한 (주)지앤디플러스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인 (주)지앤디플러스에 대해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주)지앤디플러스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C.C통신 2호점 등 9개사업자입니다. 기준금액입니다. C.C통신 2호점 등 7개사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각 적용하고, (주)위메프, (주)에스알 2개사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인 (주)천재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겠습니다. 과태료 감경입니다.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주)위메프, (주)에스알 2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1,000만원을 각 감경하고, 비트젯(주), (주)지앤디플러스, (주)천재교과서 3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겠습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C.C통신 2호점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하고, (주)천재교과서는 과태료 800만원, 비트젯(주), (주)지앤디플러스 2개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주)천재교과서입니다. (주)천재교과서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천재교과서에 대해 최종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은 사업자별로 정리한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사에 대해 총 1억 4,600만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라> 고발 사안입니다. 비트젯(주), (주)위메프, (주)지앤디플러스 3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 고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고발 기준을 참고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세부적인 고발기준 마련 시까지 위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마>번 조사결과 수사기관 이첩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C.C통신 2호점 등 6개사는 조사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조사결과를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 종전 위원회 심의의결 시에는 10만건 이상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에 대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기관 이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까지 위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건수와 관계없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별 미파기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 통보 후 내년 상반기 중 이행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안건 가>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과징금 문제인데 아까 의견진술한 위메프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원 실수로 인한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노출이 되었고, 또 건수도 20건으로 건수가 적고, 또 자발적으로 피해보상 했다고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17년에 이어서 두 번 위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위메프 측이 송사로 갈 경우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법률자문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볼까요?

○ 이태순 법률자문관

- 소송으로 가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요건에 맞추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과징금의 액수가 상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소송단계에서 아마 감액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보면 일부 패소일 수 있지만 또 일부 원칙적인 처분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처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감액 사유는 되어도 저희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거나 불법하다거나 그런 판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자문관님 말씀대로 나중에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자문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서 위메프 측은 24억원 정도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또 인력 보강하는 데 쓰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8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액수를 더 참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건은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과징금을 미부과할 수 있지만, 다만 2차 두 번에 걸쳐 했다는 점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과징금 부과(안)를 냈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행위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현재 법 규정 하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더 낮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마지막으로 엄한 행정처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주는 경고도 있고, 다만 액수가 과중하다는 점은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그렇고, 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2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강하겠다는 어느 정도는 행정처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처분이 병과될 때 항상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해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위메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한 의조로 질타를 하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 전부 다 산정한 것이고, 통상 사업자들 법 위반 사안이 있을 때 조사에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경감 수준을 대충 20% 정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메프의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고 난 이후 사후적인 조치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에게 알려 왔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서 30%를 경감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업자 쪽에서 과징금이 크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고안건에도 있듯이 이것이 전체 쇼핑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서비스 범위도 똑같기 때문에 정액과징금 부과는 맞지 않고, 저희가 적용하는 이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사무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유출되는 이 건은 각종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위원회가 여기에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4차 산업 혁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계속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무처 의견에 동의하고, 단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스마트통신은 신분증 위조가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조사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민원인은 판매점이 가입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는 해 봤으나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야 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면 신고내용과 다른 사안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판매점들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여러 건 계속 올라오는데 전에 다른 건들을 다룰 때도 이것은 통신사 쪽에 확실하게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내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통신사를 통해 제일 아랫단인 판매점 단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무처가 특별한 지도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대리점단까지는 통신회사 본사 차원에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판매점까지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경

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본사 쪽에서 판매점까지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회적 관점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인의 정보보호 가치, 구체적으로는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증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초고속 그리고 초연결망 사회에서는 자칫 인간의 인격권이 무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이 건수야 20건밖에 안 돼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앞으로 더욱 더 기업의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업이익이 항상 강조되고 개인의 인격권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에서는 비록 법률적인 다툼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무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과징금 액수가 많다고 하지만 피심인의 영업매출을 보면 과연 그 만한 덩치에 걸맞은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했는가, 더구나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사무처 의견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 두 분은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부위원장님은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57-305)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의결 주문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 주요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과는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한 이후 규개위 규제심사, 그리고 법무부, 문체부 또 법제처 사전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협찬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후 수정 사항은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고, '협찬주'의 개념을 '협찬고지' 본문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찬의 종류 사항입니다. 협찬의 종류는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은 협찬의 종류를 방송 프로그램 협찬, 공익행사 협찬 등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협찬 종류별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찬의 허용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단체의 협찬, 그리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은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은 자구 수정 정도입니다. 다음은 협찬고지에 대한 허용범위입니다. 협찬고지 여부는 사업자 자율로 하되,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 부분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건강·안전·풍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정부광고법 준수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협찬 및 협찬고지의 방법, 내용, 세부 기준 등에 대해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 구분은 자구 수정을 했고, 방통위 고시를 준수할 것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조항입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협찬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열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 부분은 「정부광고법」상 해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찬주의 방송프로그램 간 관여 금지 조항입니다.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에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로 수용 가능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 사업자는 협찬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 부분은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5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직무 관련 조항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 광고·협찬 관련 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조문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제재 조항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를 개정 하였습니다. 협찬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은 본문 체계변경에 따른 참조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 사항 부분은 본문 체계변경에 따라 과태료 조항도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번 사항은 위원님들 보고받으셨겠지만 오랜 시간 검토를 거쳐 논의된 사항이고, 올해 안에 완결지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의견 말씀해 주시고 의결했으면 합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이것이 관계부처 의견까지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6번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안건 수정안 가운데 제74조의2제1항제1호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이것이 멀리 보면 최근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파와 일부 종편에서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 상품이 동일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이런 연계 편성 행위가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실무자 의견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 연계상품,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협찬주가 판매한 상품,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제작하는 행위로, 지금 현재도 실제 종편프로그램과 또 홈쇼핑 채널이 1시간 간격으로 협찬주의 상품과 효능을 소개하는 경우는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렇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아쉬운 것은 방송사 일선 현장에서는 외주제작사들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의 돈을 외주제작사로부터 징구해 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념해서 방송 일선 현장에서 방송사라는 갑이 굉장히 환경이 더 열악한 외주제작사라는 을에 대해 이와 같이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 2,000만원을 협찬 받아왔는데 한 푼도 협찬 받아온 외주사에 주지 않고 다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법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방통위가 별도로 일반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과 을의 부당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현재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주제작사의 협찬수익에 대해서 방송사업자가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반영되어 있고, 다만 방송법에 이번 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관련해서 원래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제74조제2항에 방송사업자가 방영권만을 구매하거나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 배분 요구하는 행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빠진 것이지요?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번에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어떤 배경에서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이 부분이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항이 '정당한 사유없이'라고 할 때 그 정당한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 조금 불특정한 부분이 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이 법제처 의견이었습니까?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에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 이 뒷단의 이 문구가 정부광고법의 정부광고와 정부협찬, 특히 정부협찬 같은 경우 광고효과를 주도록 제작되고, 또 협찬고지를 해야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정부협찬이 광고효과를 주도록 제작해야 하는 부분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문체부 의견입니까?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문체부 의견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잠깐만요. 입법 제정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일일이 여기에서 다 논의하는 것은...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위원님 우려하시는 제1호 부분은 제2호에서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 주는 부분인 협찬주의 상품과 효능을 소개하고 권유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제1호가 없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마무리 발언하면 지상파방송과 외주제작사 간 그동안 소위 갑질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협찬이라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신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무처에서 많은 애를 썼고,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각 부처 간 다소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길 바라고 혹시 입법 미비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잘 지도하길 바랍니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됐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안건도 특별히 이견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8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2018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17년도에 종편·보도PP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4월까지 이행실적을 접수받았고, 6월~7월에 걸쳐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주)매일방송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조건 주요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별로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된 사항 4가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관련된 사항 4가지, 그리고 기타 사항 2가지 등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된 조건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재승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 언어 등과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이것을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이 있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과 관련해서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TV조선 관련해서는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조건으로 MBN에 대해서 외주 제작사와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 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10가지 재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을 준수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종편PP 4개사 모두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상의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종편 4사가 '18년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7건으로 4개사 모두 4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V조선의 경우 3건, 채널A 1건, MBN 3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TV조선과 채널A에 부과된 검증기구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TV조선이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채널A가 공정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TV조선의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 2명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관련 프로그램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조건에 대해서도 4개사 모두 제시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뒤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MBN에 부과되었던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의 경우에 42.26%를 기록하여 재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조건 관련해서는 4개사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정 기준을 일부 따르지 않은 금액이며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감하더라도 계획된 금액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밑에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실사 기간 동안 방송제작비의 계정원장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점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TV조선에 부과한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18년도에 1,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총 1,036억원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출자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MBN의 외주제작사와 상생방안을 준수하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밑에 <표>에 다음 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8가지 외주상생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29건의 외주계약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송기반국의 협조를 얻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작비 현실화 등 추가 현장실사를 실시해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MBN에 대해서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17년도 이행실적 점검 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MBN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BN은 이와 별개로 지난 3월 22일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사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진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문단에서 일정 부분 위반사항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사업자별로 각각 총 8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했었는데 모두 준수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YTN은 '18년도에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공정방송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노사 대표 간 면담을 통해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 사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 광고 등 뉴미디어 분야의 독자 영업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입니다. 먼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점검결과는 2020년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9년 말까지 이 부분에 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매일방송과 YTN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실익이 없어진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지만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이 조금 격이 다른데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행을 다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권고사항 가운데 아직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지요? 왜냐하면 연합뉴스TV는 내년 초에 재승인 대상 사업자니까 아마 이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경영의 분리 문제, 그다음에 텔레비전의 재원의 주축인 광고영업을 연합뉴스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도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는 특별히 추가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종편PP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매체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서 상당히 진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대한 법정제재가 우리가 제시했던 연 4건 이하로 줄어나가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경영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이행실적은 MBN이 조금 처졌지만 나중에는 위반사항이 해소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조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보도PP인 연합뉴스TV는 광고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도PP가 직접영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PP는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오락 프로그램이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공공성이 강한 뉴스전문채널입니다. 그래서 독자영업을 하면 광고영업행위가 뉴스편성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KOBACO나 렵을 통해 공동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YTN은 직접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서 렵을 통해 공동영업을 해서 좀 더 투명성과 공영성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PP도 잘 안착을 해서 매체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종편과 보도PP를 승인해 줬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잘 진입되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융합시대이고, 또 M&A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 혁신 노력을 해서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보도PP 같은 경우 YTN과 연합뉴스TV가 서로 경쟁적으로 건전한 여론조성을 놓고 경쟁을 해서 좀 더 시청률을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부문에 보면 ‘시청자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에서 15개 유형으로 확대 관리하며 매일 모든 제작진에게 공유한다, 또 5개 항목 13개 세부사유로 구분·관리해서 매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다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만을 제기한 시청자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 되어서 해소가 되었는지 그 디테일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번에 시청자 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적격자를 뽑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는데,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보면 시청자보호를 위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편성이나 제작하도록 한 움부즈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런 내실화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언론학자들이 이 움부즈만 프로그램이 편성이나 내용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제작이나 또 다른 시청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방송사마다 아주 잘 되는 곳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우리가 통합방송법 개정하면서 이런 법 취지를 살려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실화가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추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김창룡 위원님께서 첫 회의이신데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오늘 첫 데뷔 무대입니다. 우선 기자 분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룡입니다. (인사)
(박수) 방통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고, 또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제가 제대로 할지 사실은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로 오면서 3가지 정도로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만 한 것이 아니고 저도 보직교수로서 이런저런 행정을 해 봤습니다. 저는 행정의 본질은 서비스라고 믿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의 서비스 대상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도 행정의 서비스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는 5G 시대의 규제혁신은 시대적 요구라는 자세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기업과 시민에게 일단 먼저 서비스하는 마인드를 갖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각종 규제나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기업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또한 방통위의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사회의 불법, 특혜 이런 시비를 저는 여기에서부터 차단시켜서 자유시장의 공정경쟁원리와 또 법치사회를 정착시키는 행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저도 거기에 맞춰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하게 보시다시피 기술과 정보통신망 ICT를 기반으로 5G 시대가 올해부터 상용화되었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시청자나 혹은 미디어 소비자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그런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눈여겨보고, 통합방송법 개정할 때도 시청자 주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과연 현재에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비자 보호와 또 올바른 정보가 보장되어서 그런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알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의 정당한 주권 확보를 위해 방통위의 법과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데 제 역할을 좀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한상혁 위원장

- 첫 회의셨는데 앞으로 다짐 말씀해 주신 대로 방통위 위원님들 모두 의견을 모아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폐회】